

1. 개정 이유

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,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(이하 “당사회사”라 한다)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, 영공통과 이용권, 운항시각(이하 “운수권 등”이라 한다)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,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·복원을 촉진하고,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,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시각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,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 신설)
- 나.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운항시각에 대해,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사업법」 제18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운항시각 조정·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운항시각 조정·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정·배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
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운항시각 반납)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에 반납할 수 있다.

1.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
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

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정·배분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의 세부내용 등을 운항시각조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6조(운항시각 재배분)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납된 운항시각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배분한다.

② 제15조1항제2호에 따라 반납받거나 제3항에 따라 붙여진 조건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회수된 운항시각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항시각정책위원회 등에서 심의·의결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재배분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1항제2호의 반납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납되거나 제2항에 따른 재배분이 철회된 운항시각을 최초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배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4조(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6.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정·배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
6.·7. (생략)	7.·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제15조(운항시각 반납)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시각 조정기관에 반납할 수 있다.
	1.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
	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

<신 설>

조치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
서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
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
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

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
호에 따라 운항시각을 반납하는
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
조정·배분 기준과 절차를 정하
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
정조치의 세부내용 등을 운항시
각조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16조(운항시각 재배분) ① 제15
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납된 운
항시각은 제10조 및 제11조에
따라 재배분한다.

② 제15조1항제2호에 따라 반납
받거나 제3항에 따라 붙여진 조
건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제1
호나목에 따라 회수된 운항시각
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
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
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
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
반영하여 제4조제1항제6호에
따른 운항시각정책위원회 등에
서 심의·의결한 기준과 절차에

제15조 (생 략)

따라 재배분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재배분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1항제2호의 반납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납되거나 제2항에 따른 재배분이 철회된 운항시각을 최초 반납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배분할 수 있다.

제17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